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39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6年 3月 12日(火) 15時00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平昌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等改正條例案
2. 平昌郡里長定數條例等改正條例案
3. 平昌郡旅費條例改正條例案
4. 平昌郡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及運用條例等改正條例案

附議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平昌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等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_____ 2 面
3. 平昌郡里長定數條例等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_____ 3 面
4. 平昌郡旅費條例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_____ 3 面
5. 平昌郡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及運用條例等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5 面
6. 休會의件 (議長提議) _____ 6 面

(15時00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 도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요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진솔한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5時03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 議長 金樂雲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平昌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증改正條例

案(平昌郡守提出)

3. 平昌郡里長定數條例증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4. 平昌郡旅費條例증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15時05分)

○ 議長 金樂雲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이장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과장 이영덕입니다. 금일 상정된 3건의 조례중 먼저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휴가중 연가 일수를 근속년수에 따라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내용을 복무조례에 삽입,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현실과 맞지않는 명칭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간일수를 3일에서 20일까지 실시하던 것을 4일에서 최고 23일까지로 연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것과, 둘째 소속공무원의 연가계획 수립시 연가가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이며 셋째,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넷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 하도록 정치적 행위에 관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부면 송정택지조성 사업 지구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 신축으

로 인한 인구과밀 현상으로 단일 행정지도는 리행정 추진 및 주민자치능력 제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자치능력 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부면 송정1리중 기존 농촌주택단지를 송정1리로 송정1리 7반 성미아파트 지역을 송정3리로, 단독주택지역을 송정4리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평창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평창군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여비조례의 목적중 포괄적 여행에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으로 구분 하였으며, 현행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로 개칭하고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을 정함

에 있어 현행 도지사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여비의종류, 여비정액, 이전비, 현장지도 여비는 국내 및 국내외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소속장관을 군수로 보고 관용차량관리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보며 연구직, 전문직, 국가공무원은 지방연구직, 지방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중改正條例案
 - 平昌郡里長定數條例중改正條例案
 - 平昌郡旅費條例改正條例案
- (以上 3件 -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 (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이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平昌郡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중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5時15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지역경제과장 강경석입니다.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자금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중 기존 기본지원사업 만으로 운용되던 것으로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본지원사업은 공공시설, 마을회관, 농기계창고등 및 재산 생산기반 시설 사업으로서 농로포장등을 말하며 주민복지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유인물을 참조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參 照 >

· 平昌郡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 및 運用條例 修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休會의件 (議長提議)

(15時18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3월 18일 오후 3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9회 평창군의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時19分 散會)

○ 出席議員

議 長	金 樂 雲
副議長	李 相 薰
議 員	李 慶 鎮
議 員	劉 燉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金 斗 經
議 員	禹 康 鎬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 劃 室 長	申 大 松
內 務 課 長	李 永 德
社會振興課長	宋 在 明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社 會 課 長	金 榮 柱
環境保護課長	李 敬 洙
地域經濟課長	姜 慶 錫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 昌 吉
社會指導課長	尹 澈 竣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李 京 植
議 事 係 長	咸 京 鎬
地方行政主事補	邊 相 得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席表 (12面に 실음)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 捺印함.

1996年 3 月 日

議 長

李京植 (Handwritten signature and official seal)

議 員

禹康鎬 (Handwritten signature and official seal)

議 員

김우정 (Handwritten signature and official seal)

事務課長

이강석 (Handwritten signature)

.....
【 報 告 事 項 】

○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운영사항

- . 위원장 - 이경진 위원 선임
- . 간 사 - 우강호 위원 선임

○ 의안처리사항

- .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
회운영에따른현지확인계획, 서류제
출요구서, 관계인출석요구서
('96. 3. 11 - 평창군 이송)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휴가중 연가일수를 근속년수에 따라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행위에 관한 내용을 복무조례에 삽입 정치적중립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명칭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근속기간별연가일수 확대조정

종전3일 ~ 20일까지에서 → 4일 ~ 23일까지로 (안제18조)

나. 연가계획수립시→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수립·실시 (안제19조 제1항)

다. 장기근속휴가조항 신설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조항 (안제23조 제6항)

라.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내용 신설

→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도록 조항규정 (안제27조 제1항 및 제2항)

3. 검토의견

가. 근속기간별 연가일수가 늘어난 것은 "효도휴가제"의 시행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한것이고, 연가계획 수립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한 조항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임.

나. 안제23조제6항에서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총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인지 아니면 포상휴가의 성격인지 그 시행에 명확성을 기하는 조항임.

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위의 범위에 대해 조례로 명문화한것은 공무원의 정치적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이장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일부 행정리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 신축으로 인한 인구과밀 현상으로 단일 행정리로는 리행정 추진 및 주민자치능력 제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주민편의증진 및 자치능력 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진부면 송정1리중 기존 농촌주택단지를 송정1리로, 송정1리 7반 석미 아파트 지역(송정리중 대지 2537, 2538, 2539번)을 송정3리로, 단독 주택단지지역 238필지 (2506-1 ~ 2640)를 송정4리로 분리조정

3. 검토의견

가. 송정택지조성에 의한 인구과밀 현상에 따라 리행정추진의 원활 및 주민 자치능력제고를 위해 밀집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를 분리조정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한 것이나 행정리의 분리로 인한 각종 공부의 정리등에 신속·정확을 기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케 해서는 안될 사항이라 판단됨.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14,857호('95. 12. 29)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평창군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월액여비의 지급대상등을 규정함. (안 제2조)
- 다. 국내여비규정 준용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라. 국외여비규정 준용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3. 검토의견

- 가. 현재까지 국내여비규정 내지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오면서도 중앙부처의 장 및 국가공무원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별도의 준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것을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현실에 맞도록 그 직에 상당하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으로 준용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의 적용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타당한 사항이라 판단됨.
-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기본지원사업"및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자금사용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련법률조항 및 특별회계운용대상사업명시 (안제1조)

나. 관련용어의 정의 규정

→ 기본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용자금등기타 (안제2조)

3. 검토의견

가. 특별회계의 운용대상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안정사업지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자금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한것은 자금이 타용도로 유용되지 않고 주변지역 주민에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임.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